

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2006. 5. 26
[조례 제195호]

일부개정 2012. 2. 24 조례 제 412호
(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 2013. 2. 22 조례 제 471호
일부개정 2013. 11. 8 조례 제 506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7. 5. 12 조례 제 745호
일부개정 2018. 12. 14 조례 제 839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
(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
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, 제60조, 제109조에 따라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, 감독 대상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7. 5. 12]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증평군재무관과 증평군분임재무관(재무과장)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13. 2. 22, 2017. 5. 12>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위촉한다. <개정 2013. 2. 22, 2017. 5. 12>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로 재직 중인 사람 <개정 2013. 2. 22>
2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<개정 2013. 2. 22>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사람 <개정 2013. 2. 22>
4.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관련

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<개정 2013. 2. 22>

5.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·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<개정 2013. 2. 22>
6.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·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<개정 2013. 2. 22>
7. 「지방회계법」 제46조에 따른 증평군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

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리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13. 11. 8>

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증평군분임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3. 2. 22, 2017. 5. 12>

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3. 2. 22>
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5호부터 제6호까지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3. 2. 22, 2017. 5. 12>

1.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<개정 2013. 2. 22>
2.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
3.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
4. 삭제 <2017. 5. 12>

5.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<개정 2013. 2. 22>
6.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3. 2. 22, 2017. 5. 12>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 <신설 2013. 2. 22>

1.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

2.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

제5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 <개정 2013. 2. 22>

② 위원회의 회의(소위원회를 포함한다)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3. 2. 22>

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 2. 22>

제6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·용역·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2. 22>

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임하되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 2. 22, 2017. 5. 12>

④ 소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리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13. 11. 8>

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3. 2. 22, 개정 2017. 5. 12>

제7조(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)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부의 받은 때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2. 22, 2017. 5. 12>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2. 22>

제8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(소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2. 22>

제9조(심의결과 반영)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

증평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2. 22>

② 제7조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. <신설 2013. 2. 22>

제10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2. 22>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<개정 2013. 2. 22>
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<개정 2013. 2. 22>

제11조 삭제 <2022. 12. 29>

제12조(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) 주민참여감독(이하 “감독”이라 한다)의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. <개정 2013. 2. 22, 2017. 5. 12, 2018. 12. 14>

제13조(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)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「증평균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」(이하 “여비조례”라 한다)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(공무원 5급 상당)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히 현지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2. 22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 2. 24 조례 제412호, 증평균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0 까지 생략

③1 증평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
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「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㉓ 부터 ㉖ 까지 생략

부칙(2013. 2. 22 조례 제47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 11. 8 조례 제506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경리담당주사로”를 “경리팀장으로”로, 제6조제4항 중 “경리담당주사로”를 “경리팀장으로”로 한다.

⑦ 부터 ⑫ 까지 생략

부칙(2017. 5. 12 조례 제74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12. 14 조례 제839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,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